

제2018-1회
서울교통공사 채권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2018. 6. 18.

계약자 “발행회사” : 서울교통공사

계약자 “대표주관회사” : 교보증권(주)

서울교통공사(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와 교보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한다)는 "발행회사"가 2018년 6월 18일 발행하는 제 2018-1회 서울교통공사채권 (이하 "본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단)

"발행회사"는 본 채권에 대하여 "교보증권(주)"를 대표주관회사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총액인수 및 매출할 것을 위탁하며, "교보증권(주)"는 이를 수락한다.

〈 2018-1회 〉

"대표주관회사" : 교보증권(주) 권면총액기준 금삼천오백억원(₩ 350,000,000,000)

합 계 권면총액기준 금삼천오백억원(₩ 350,000,000,000)

제 2조 (인수대금 납입)

"대표주관회사"는 본 채권의 인수대금을 2018년 6월 18일까지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발행회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3조(사채의 발행조건)

본 채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의 명칭
 - 제2018-1회 서울교통공사채권
2. 채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표부 고정금리부 무보증 등록채권
3. 채권의 권면금액
 - 제2018-1회 : 금삼천오백억원(₩350,000,000,000)
4. 채권의 총발행가액 : 권면금액의 100%
5. 채권의 이율
 - 제2018-1회 : 2.675%
6. 채권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2018-1회】

본 채권의 원금은 2023년 6월 18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그 상환기일로 한다.

【제2018-1회】

본 채권의 원금은 2023년 6월 18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그 상환기일로 한다.

7.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제2018-1회】

이자(本)는 본 채권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채권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8. 09. 18, 2018. 12. 18, 2019. 03. 18, 2019. 06. 18,
2019. 09. 18, 2019. 12. 18, 2020. 03. 18, 2020. 06. 18,
2020. 09. 18, 2020. 12. 18, 2021. 03. 18, 2021. 06. 18,
2021. 09. 18, 2021. 12. 18, 2022. 03. 18, 2022. 06. 18,
2022. 09. 18, 2022. 12. 18, 2023. 03. 18, 2023. 06. 18,

8.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주)우리은행 장한평금융센터

9. 본 사채의 발행일 : 2018년 6월 18일

제 4조 (인수대금 납입)

“대표주관회사”는 본 채권의 인수대금을 “발행회사”가 지정한 (주)우리은행 장한평금융센터 (예금주 : 서울교통공사, 계좌번호 : 583-159616-01-184)에 발행과 동시에 납입 완료하여야 한다.

제 5조 (인수수수료)

-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채권 인수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
- ② "대표주관회사"는 채권 인수절차 완료 후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발행회사"에게 인수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행회사"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제 6조 (채권등록발행 및 등록기관)

- ① 본 채권은 공사채등록법령에 따라 등록 발행하고, 등록기관을 한국에

탁결제원으로 하며, 등록필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정한 양식으로 한다.
② "발행회사"는 본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 및 공사채등록법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채권발행내역 통지업무 일체를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채권발행내역 통지업무를 수행한다.

제 7조(등록 청구)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채권의 일괄등록을 청구한다. 단, "대표주관회사"는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청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8조 (사채의 상장)

"대표주관회사"는 본 채권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절차를 취한다.

제 9조 (이의처리)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 및 상관례에 따라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상기 계약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기명날인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6월 18일

“발행회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대표주관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주)

대표이사 김해준

